#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351 제출연월일: 2024. 7. 26.

제 출 자: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폐지하면서, 폐지분인 궐련 20개비당 5원만큼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임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235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#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1. 궐련

- 가. 「지방세법」 제47조제4호가목에 따른 제조자의 경우: 20개비당 846원
- 나. 「지방세법」 제47조제4호나목에 따른 제조자 및 같은 조 제6호 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: 20개비당 841원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담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	제23조(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
과・징수 등) ① 보건복지부장	과·징수 등) ①
관은 「지방세법」 제47조제4	
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	
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	
조 제1호에 따른 담배(같은 법	
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	
제되는 것, 같은 법 제63조제1	
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	
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	
것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	
제23조의2에서 같다)에 다음 각	
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(이하	
"부담금"이라 한다)을 부과·징	
수한다.	<b>.</b>
1. 궐련: 20개비당 841원	1. 궐런
	가. 「지방세법」 제47조제4
	호가목에 따른 제조자의
	경우: 20개비당 846원
	나. 「지방세법」 제47조제4
	호나목에 따른 제조자 및
	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
	입판매업자의 경우: 20개
	비당 841원

	2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